■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6. 10. 2.>

(앞 쪽)

제 호

#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

1. 법인 명칭:

2. 소 재 지:

3. 대 표 자
   - o 성 명:
   - o 생년월일:
   - o 주 소:

4. 사업 내용:

5. 허가 조건: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**행정안전부장관**
**중대범죄수사청장**
**경찰청장**
**소방청장**

직인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## 준수사항

1. 「민법」 및 「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.
2.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3.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*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 가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서 1부
 나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서 1부
 다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  * 주무관청: 행정안전부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(☏ 02-2100-○○○○)
4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가.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
 나.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다.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라.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5. 법인이 해산(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)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.
6.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

< 변경사항 >

| 변경일 | 내 용 | 확 인 |
|---|---|---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